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9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0누1554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구합74493 판결
변 론 종 결	2021. 5. 28.
판 결 선 고	2021. 6. 25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. 9. 13. 한 2018년 귀속 제1기 정기분 재산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9

310,704,110원 및 지방교육세 46,171,650원, 2018년 귀속 제2기 수시분 재산세 310,704,100원 및 지방교육세 46,171,660원의 부과처분과 2019. 9. 9. 한 2019년 귀속 제1기 정기분 재산세 269,558,100원 및 지방교육세 40,035,300원, 2019년 귀속 제2기 수시분 재산세 269,558,110원 및 지방교육세 40,035,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즉,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형식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적용배율 면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.』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19

○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의 『구별되는 점을 고려하면』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구별되는 점,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D점의 직원이나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, 비록 이 사건 토지가 D점 건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』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